

공정거래위원회 주요 심결사례

2000. 8. 8. 심결

사건명	위반내용	시정조치
(사)한국서점조합연합회 부산시서점조합의 거래거절강요행위에 대한 건 (2000부사0319)	(사)한국서점조합연합회 부산시서점조합은 1999. 12월 중순경 동 조합의 임원인 부산광역시 수영지구 및 동 북구 지구의 위원장으로부터 6개 비회원 서적소매상들에 대한 서적 공급중단을 서적도매상에게 요구하여 줄 것을 요청 받은 후, 1999. 12월 중순경 자신의 사무실에서 부산도서, 금성도서, 제일도서, 우리도서 및 대성도서 등 5개 도매서적상에게 위 6개 비회원 서적소매상에 대하여 서적공급을 중단하도록 요구하기로 결정하였으며, 1999. 12월말경 위 5개 도매상에게 6개 소매서적상에 대해 참고서를 공급하지 말도록 요구함에 따라 일부 서적도매상들이 비회원 서적소매상과의 거래를 중단한 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부당하게 거래거절을 강요하여 불공정거래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공정거래법 제26조제1항제4호 위반	◎ 거래거절강요행위를 하지 말라는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자신의 15개 지구위원회에 서면으로 통지하고 부산광역시지역에서 발행되는 1개 지방일간지에 3단×10cm의 크기로 게재하여 공표토록 함 ◎ 과징금 납부 : 6,700천원
진도지역 4개 주류도매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2000광사0489)	합자회사 대진상사, 합자회사 진일상사, 유한회사 옥주주류상사, 유한회사 중앙주류는 1999. 12. 5. 진도군 진도읍 성내리 소재 식당에서 관리비 절감 등 경영여건의 개선을 위한 모임을 갖고, 2000. 1. 1.부터 거래소매점에 대한 각 업체 대표판매제품인 보해골드 및 맥주(0.5l)에 대하여 업소판매용의 경우는 25%, 가정판매용의 경우는 8~10%에 해당하는 판매마진을 유지하기로 합의하였으며, 각 거래소매점에 주류를 판매할 때 1999. 12월말 기준으로 누적된 외상매출금액 이상의 외상판매를 하지 않기로 함과 동시에 자신들 중 한 업체가 거래소매점에 외상으로 제품을 판매하지 아니함으로써 같은 소매점이 다른 업체에 외상거래를 요청하더라도 상호 협조하여 외상거래를 하지 않기로 합의, 2000. 4. 7.까지 시행하여 진도지역 주류도·소매업분야에서의 자유로운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함으로써 공정거래법 제19조제1항제1호 위반	◎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지 말라는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연명으로 광주광역시 또는 전라남도지역에서 발행되는 1개 지방일간지(전판)에 3단×10cm의 크기로 게재하여 공표토록 함 ◎ 과징금 납부(단위 : 천원) 대진상사 : 3,000 진일상사 : 3,400 옥주주류상사 : 3,800 중앙주류 : 900
한국산업폐기물처리공제조합의 경쟁제한행위에 대한 건 (2000단체0583)	한국산업폐기물처리공제조합은 전국 사업장폐기물중간·최종처리업시장에서의 과당경쟁을 방지한다는 명목하에 1999. 10. 20. 전 조합원인 사업장폐기물중간·최종처리업자 29명에게 "폐기물종류별처리단가 고시 안내 및 고시단가 적용 요청"이란 제목의 문서를 보내 향후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의 폐기물처리물량의 입찰에	◎ 경쟁제한행위를 하지 말라는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1개 중앙일간지에 3단×10cm의 크기로 게재하여 공표

사건 명	위 반 내 용	시 정 조 처
	<p>참가하여 응찰가격을 제시할 때 고시단가를 적용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1999. 10. 27.부터 2000. 4. 28.까지 수차에 걸쳐 수도권지역 조합원인 폐기물중간처리업자에게 재계약을 위하여 단가조정중에 있는 배출업체의 명단을 자기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통보받은 배출업체의 명단과 “폐기물종류별처리고시단가 적용 협조 요청” 또는 “거래실서유지 협조 요청”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수차례 수도권 소재 17개 조합원사인 폐기물중간처리업자들에게 통보, 배출업체로부터 재계약을 위한 폐기물처리비용 견적제출을 요구받을 때에는 고시단가를 적용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1999. 11월말경 2명의 지정폐기물최종처리업자가 동 업종시장에 신규로 진입함에 따라 과당경쟁을 방지한다는 명목하에 자신과 동 업체 대표 6명이 1999. 12. 17. 경주에서 모임을 갖고 기존 4개 업체의 월평균 반입물량의 30%를 신규 2개 업체에게 배분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물량배분은 자신이 각 업체 영업실무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실행하기로 합의한 후 이에 따라 1999. 12. 20.과 12. 24. 기존업체의 거래처 물량 중 일부를 신규업체에 배분하고 그 결과를 2000. 1. 14. 6개 업체들에게 지정(매립)폐기물 물량배분 내역을 통보하여 전국 폐기물 중간·최종처리업시장과 수도권지역 폐기물중간처리업시장 및 전국 지정(매립)폐기물최종처리업시장에 있어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함으로써 공정거래법 제26조제1항제1호 위반</p>	<p>토록 함</p>
<p>일양약품(주)의 구속조건 부거래행위에 대한 건 (2000경축0660)</p>	<p>일양약품 주식회사는 관할구역 외에서 제품을 판매한 대리점에 대해 두차례 경고 후 3차 적발시 거래를 중단하고 제품을 회수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으며, 실제로 1997. 7 월경 울산동구대리점이 울산중구대리점 관할구역에서 제품을 판매한 것에 대해 경고하는 등 대리점들의 자율적 의사를 제한하여 대리점들간의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정거래법 제23조제1항 위반</p>	<p>◎ 구속조건부거래행위를 하지 말라는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모든 대리점에 서면으로 통지토록 함</p>
<p>(주)두산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대한 건 (2000전사0595)</p>	<p>주식회사 두산은 자신의 대전지점은 충남 논산지역에서 자사 주류 중 뉴그린 소주가 차지하는 시장 점유율이 8.6%에 불과하여 동 지역에서의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2000. 3월부터 4월까지 논산소재 음식점 등 2차 거래처에 주류 주문량을 기준으로 일정량의 현물을 무상으로 지급하는 일명 「덤판매」를 실시하면서 신진주류, 논산주류, 강경주류 등 논산지역 3개 주류도매장에게 뉴그린 소주</p>	<p>◎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를 하지 말라는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1개 대전지방일간지(전판)에 5단×12cm의 크기로 게재하여 공표토록 함</p>

사건명	위반내용	시정조치
	(360ml) 플라스틱박스(30본입) 5박스에 종이박스(20본입) 1박스의 비율로 지원하고 각 주류도매장으로 하여금 216개 음식점에 위 플라스틱박스 및 종이박스를 약 5:1 비율로 현물 지급토록 하였고, 동 지역 소재 2차 거래처에 종사하는 종업원에게 자사 주류 중 뉴그린 소주를 소비자에게 권유하도록 하고 자사 뉴그린 소주 병마개를 모아 제시한 41개 음식점 종업원들에게 병마개 수거료 303천원을 지급하였으며, 2000. 3월 동 지역의 음식점의 자사 주류 중 뉴그린 소주 위주의 전시·판매를 위해 자사 제품의 취급비중이 높은 3개 주류도매장으로 하여금 12개 유흥음식점에 쇼케이스를 지원하도록 하고 쇼케이스 구입비 총 5,040천원을 지급하는 등 거래처는 물론 소비자의 상품선택권을 제한하여 소주제조업체간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정거래법 제23조제1항제3호 위반	

2000. 8. 14. 심결

사건명	위반내용	시정조치
텍사스주유소의 석유판매업에 있어서의 공급자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건 (2000부사0554)	텍사스주유소는 타이거오일주식회사의 석유제품을 판매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폴사인 등을 설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정유주식회사의 석유판매대리점인 남양석유주식회사 및 삼양석유주식회사로부터 석유제품을 구입, 판매하여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함으로써 표시·광고법 제3조제1항제1호 위반	◎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하지 말라는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사업장 출입구 등 고객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전지크기의 공표문을 7일간 부착하여 공표토록 함
건설공제조합의 선급금보증약관상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한 건 (9911약제1664)	건설공제조합은, 발주자가 임의로 지급하지 않고 법원의 명령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제3자에게 선급금을 지급한 경우 등에는 자신이 보증책임을 부담함이 합리적인데도, 자신이 사용하는 선급금보증약관 제2조제6호에 선급금을 채무자가 아닌 제3자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조항을 규정함으로써 약관법 제17조 위반	◎ 해당 약관조항을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삭제 또는 수정토록 함
삼공물산(주)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2000광고0549)	삼공물산 주식회사는 월간잡지 산업안전 1998. 8월호부터 2000. 2월호에 광고하면서, 자신의 제품 중 4개 제품에 대해서만 KS표시인증을 받았으며 이 중 방독면과 일	◎ 부당한 광고행위를 하지 말라는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

2000. 8. 16. 심결

사 건 명	위 반 내 용	시 정 조 처
	<p>반 방독면은 (주)산청도 KS표시인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광고 아래쪽에 “생산품목”이라는 제목하에 박스를 치고 “산업용 방독면, 산업용 방진마스크, 송기마스크, 농약마스크, 민방위용 방독면, 화재피난용 방연마스크, 간이마스크, 각종 정화통, 메카니칼 필터, 정전필터, 구멍땀목, 고무보트, 화생방 보호의, 화생방 보호장갑, 화생방 보호덮개, 화생방 집단보호장치, 각종 고무도포제품(보트, 판초) 등”으로 생산품목을 기재하고 바로 우측에 자신의 심벌과 KS마크를 게재함과 아울러 “국내 유일의 KS표시허가 제품을 생산하는 삼공물산주식회사”라고 표현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자신이 생산하는 제품 모두가 국내에서 유일하게 KS표시인증을 받은 것으로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허위·과장광고행위를 함으로써 구 공정거래법 제23조제1항제6호 및 표시·광고법 제3조제1항제1호 위반</p>	<p>내에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월간잡지 산업안전에 1개면의 2분의 1 이상의 크기로 게재하여 공표토록 함</p>
<p>강원도광고물제작공업협동조합의 구성사업자에 대한 사업활동제한행위에 대한 건(2000단체0121)</p>	<p>강원도광고물제작공업협동조합은 1997년 강원도 내 안내판 설치와 관련, 공공기관과 단체수의계약을 체결하여 그 물량을 구성사업자에게 배정하면서 자신의 1997년도 단체수의계약 업체별 수혜현황표에 안내판 총 계약실적 5억9885만원 중 중앙공사에 5562만3천원(9.3%)을 배정한 것으로 기재하였으나 실제로는 1997년 총 13건 중 12건을 중앙공사에게 배정·시행하게 하고 그 공사대금을 지급하였으며, 1999. 3. 2. 원주시청이 발주한 도경계 지역 야립간판 설치공사의 경우에도 자신의 업체별 납품 배정서에는 중앙공사에 3천7백만원, 대림기업에 3천만원, 피닉스광고에 3천3백만원, 신용종합광고에 3천9백5십만원, 현대광고에 3047만2천원 등 5개 업체에 균등 배정한 것으로 기재하였으나 실제로는 중앙공사의 연고권을 인정하여 동 공사를 중앙공사에 단독 배정하는 등 단체수의계약운용규칙인 동일업체 배정비율한도를 각각 위반하여 단체수의계약 물량을 정당한 이유없이 특정조합원에게 편중 배정하여 정당하게 물량배정을 받아야 할 다른 조합원의 단체수의계약 참여를 제한함으로써 공정거래법 제26조제1항제3호 위반</p>	<p>◎ 구성사업자에 대한 사업활동제한행위를 하지 말라는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자신의 모든 구성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토록 하며, 1개 강원도 내 지방일간지(전판)에 3단×10cm의 크기로 게재하여 공표토록 함</p>
<p>4개 할부금융사들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2000공동0384)</p>	<p>LG캐피탈(주), 삼성캐피탈(주), 현대캐피탈(주), 코오롱할부금융(주)는 중고차 할부금리 조정을 독자적으로 하지 않고 사전에 상호 의사연락을 통하여 얻은 정보를 의사결정에 반영, 1999. 1. 20.부터 1. 28.까지 중고차 할부금리를 종전의 26~28%에서 25%로 동일하게 인하조정·시</p>	<p>◎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지 말라는 시정명령 ◎ 과징금 납부(단위 : 천원) LG캐피탈(주) : 465,500 삼성캐피탈(주) : 352,200</p>

사건명	위반내용	시정조치
	행하여 중고차 할부금융분야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정거래법 제19조제1항제1호 위반	현대캐피탈(주) : 77,200 코오롱할부금융(주) : 98,800

2000. 8. 23. 심결

사건명	위반내용	시정조치
(주)미래바이오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2000광고0416)	(주)미래바이오는 2000. 1. 12.부터 3. 21.까지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숙취제거음료인 「리셉션」 제품을 중앙일간지에 광고하면서, 일반적으로 기능성 음료의 효능에 관한 관능시험은 사람의 체질에 따라 효과가 달라짐에도 불구하고 “관능테스트 - 소주와 리셉 드링크를 1:1로 섞은 후 20분이 지나면 알콜의 독한 맛이 약화되는 것을 확인 …, 술 마시기 전 리셉션 드링크를 마시면 술맛이 신선해지고 취기가 잘 오르지 않습니다. 술 마신 다음날 리셉션 드링크를 마시면 탁월한 숙취제거, 갈증해소, 두통감소 등의 효과를 …”이라고 표현하였고, 과학적·객관적인 검증결과도 없이 “리셉션 드링크의 효능 : 간보호, 숙취제거, 주독해소, 구취제거, 알콜분해, 항암효과”라고 표현하였으며, 효능을 인용한 관련 문헌에 대한 아무런 언급 없이 “신비의 나무 지구자의 놀라운 효능이 속속 입증되고 있습니다 : 취한 사람도 금방 깨어나게 하는 효과 … 속 울렁거림이나 현기증, 두통, 숙취현상에 탁월한 효능 …”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허위·과장광고행위를 함으로써 표시·광고법 제3조제1항 위반	◎ 부당한 광고행위를 하지 말라는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1개 중앙일간지(전판)에 3단 × 10cm의 크기로 게재하여 공표토록 함

2000. 8. 26. 심결

사건명	위반내용	시정조치
귀빈예약장의 거래강제행위에 대한 건 (2000구사0726)	귀빈예약장은 예약실 사용과 예약 관련 부대시설의 이용은 서로 별개로서 이용고객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1999. 12. 10. 고객에게 자신이 지정하는 사업자로부터 비디오촬영을 하도록 강요하여 예약실 임대계약 및 비디오촬영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공정거래법 제23조제1항제3호 위반	◎ 거래강제행위를 하지 말라는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예약장 출입구 등 고객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전지크기의 공표문을 7일간 부착하여 공표토록 함